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62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2
※ 참고자료	7
1. 공공체육시설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1.
3. 회 부 일: 2025. 1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개인 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했으나 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충처리민원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영조물책임보험 내 별도 특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도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② 직장의 장에 대하여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보험 가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및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²⁾.

또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³⁾.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한다.

한편, 현행법⁴⁾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민간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또는 시설 내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⁵⁾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영조물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에 따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고 있으나, 보상한도 및 특약⁶⁾ 가입 여부 등은 가입 주체의 선택사항으로 체육시설 내 이용자 간 사고 등에 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하위법령에서 최소 보험 보장 수준 등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보험 보장 수준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직장체육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소속 직원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및 책임 분쟁의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험 가입 의무만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6) 체육시설 내 이용자 간 사고에 따른 보상 등

7) ※ 공공체육시설 보험가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 공공체육시설 보험가입 대상 확대 건의(충청남도, '25.4)

- 체육시설법상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용자 간 사고에 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 명시화

○ 체육시설업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개선 건의 (경상남도, '23.8)

-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 시 이용자의 피해발생 보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규정이 미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체육시설법 제26조의 개정을 건의

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장의 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민간 체육시설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개별 사안별로 그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7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 7. (생략)

② (생략)

※ 참고자료

1. 공공체육시설 현황('24.12.기준) * 직장체육시설 제외

□ 설치 주체별 시설 : 38,603개소

(단위: 개소, m²)

시설항목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8,603	234,010,915	38,561	231,302,315	16	1,386,280	10	209,043	16	1,113,277
1. 육상경기장	249	20,596,790	246	20,502,947	2	80,843	1	13,000		
2. 축구장	1,163	33,897,030	1,161	33,804,703	1	7,140	1	85,187		
3. 하키장	18	1,169,357	16	973,156	2	196,201				
4. 야구장	373	11,201,981	372	10,160,801	1	1,041,180				
5. 씨름경기장	11	496,536	10	485,864					1	10,672
6. 테니스장	915	11,419,958	909	11,382,305	3	18,595	1	5,000	2	14,058
7. 씨름장	73	1,134,434	73	1,134,434						
8.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27,850	48,877,134	27,850	48,877,134						
9. 체육관	1,530	36,302,920	1,517	36,119,946	3	10,229	5	101,856	5	70,889
구기체육관	559	12,917,875	552	12,762,159	2	6,606	3	99,290	2	49,820
투기체육관	48	1,493,303	46	1,474,297	1	3,623	1	2,566	1	12,817
생활체육관	923	21,891,742	920	21,883,490			1		2	8,252
10. 전천후게 이트볼장	2,000	11,977,087	2,000	11,977,087						
11. 수영장	579	13,272,657	574	13,232,834	1	8,794	1	3,000	3	28,029
12. 롤러스케 이트장	184	2,637,651	184	2,637,651						
13. 사격장	26	1,083,972	26	1,083,972						
14. 국궁장	285	2,942,923	285	2,942,923						
15. 양궁장	27	678,141	26	677,141			1	1,000		
16. 승마장	24	1,065,286	24	1,065,286						
17. 골프연습장	92	1,340,909	90	1,339,907					2	1,002
18. 조정경기장	10	1,197,279	8	211,635	1	734			1	984,910
19. 요트장	15	315,018	15	315,018						
20. 빙상장	36	3,745,427	33	3,722,863	2	22,564			1	-
21. 설상경기장	4	462,500	4	462,500						
22. 파크골프장	462	8,596,930	462	8,596,930						
23. 기타 시설	2,677	19,598,994	2,676	19,595,277					1	3,717
- 풋살장	631	5,384,146	631	5,384,146						
- 그외	2,046	14,214,848	2,045	14,211,131					1	3,717

□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 38,603개소

지역/시설항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38,603	3,254	1,908	1,011	1,314	1,236	696	463	181	5,029	3,032	2,735	2,425	1,418	4,350	5,376	3,514	661
1. 육상경기장	249	3	3	5	10	2		6	1	40	33	17	17	14	29	22	32	15
2. 축구장	1,163	74	33	39	34	25	14	28	13	279	76	43	41	97	92	78	175	22
3. 하키장	18	1	1	1	2					3	2	2	1	2	2		1	
4. 야구장	373	23	11	16	9	11	7	5	7	81	27	17	26	24	31	32	38	8
5. 사이클경기장	11	1	1	1	1		1			1	1	1		1	1		1	
6. 테니스장	915	76	41	32	40	20	8	19	8	230	78	35	46	55	51	67	101	8
7. 씨름장	73		2	3	1	1		1		12	5	7	4	8	12	9	7	1
8.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27,850	2,538	1,576	760	989	1,043	557	263	50	2,566	2,114	2,259	1,728	787	3,553	4,317	2,260	490
9. 체육관	1,530	166	38	36	51	29	25	23	27	377	123	61	84	105	97	121	132	35
구기체육관	559	51	4	4	4	3	8	7	2	189	44	18	43	30	43	34	58	17
투기체육관	48	1	2	4	3	1				5	10	3	2	1	6	5	4	1
생활체육관	923	114	32	28	44	25	17	16	25	183	69	40	39	74	48	82	70	17
10. 전천후게이트볼장	2,000	31	15	13	78	45	22	27	14	408	231	106	243	153	267	98	211	38
11. 수영장	579	99	28	20	28	10	19	16	7	135	37	26	22	28	26	40	36	2
12. 롤러스케이트장	184	14	13	6	4	2	2	2	9	52	9	7	14	7	7	14	20	2
13. 사격장	26		1	1	1			1		1	7	3	1	1	1	4	4	
14. 국궁장	285	8	3	3	8	3	5	4	3	57	33	13	23	15	32	22	48	5
15. 양궁장	27		1	3	2	1	1	1		6	4	3		2	1	1	1	
16. 승마장	24		2	3		1	1			1	2		2	5	2	3	2	
17. 골프연습장	92	33	7	1	4	2				11	10	3		3	4	3	10	1
18. 조정카누장	10		1							2	1	3			2		1	
19. 요트장	15		1							1	2	1	1	1	2	1	5	
20. 빙상장	36	3	2	1	1	1	1		1	10	8	1	1	1		2	3	
21. 설상경기장	4										4							
22. 파크골프장	462	23	17	34	4	10	4	8	7	46	40	21	34	25	38	66	75	10
23. 기타시설	2,677	161	111	33	47	30	29	59	34	710	185	106	137	84	100	476	351	24
- 풋살장	631	34	9	11	9	5	5	34	14	180	64	20	31	39	30	70	70	6
- 그외	2,046	127	102	22	38	25	24	25	20	530	121	86	106	45	70	406	281	18